

# 강원발전연구원 청사 CCTV 운영관리 방침

[제정 2012.01.0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강원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CCTV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제 2 장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제3조(CCTV 설치목적) 연구원 청사 내에서의 범죄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과 보안유지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CCTV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등) ① 설치장소는 연구원 청사 내부 공용 공간으로 한정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며, 주요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구
2. 주차장

- 3. 그 밖에 엘리베이터 홀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공간
- ② 촬영시간은 24시간 연속촬영으로 연중 운영한다.

제5조(담당부서 및 책임자지정) ① CCTV 설치 및 운영관리는 사무처 총무팀에서 담당하며,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 ② 책임자는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CCTV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 및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열람·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별도의 개인영상정보 관리자(이하 “정보관리자”라 한다)의 지정 및 접근권한 부여를 통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제6조(안내판 설치)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영상 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 ② 안내판에 명시하여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목적
  2. 설치장소
  3. 촬영범위·시간
  4. 책임자 및 연락처
- ③ 안내판은 청사 출입구 또는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관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7조(영상정보의 관리) ① 영상정보는 기기조정실에 설치된 CCTV 운영 컴퓨터에 저장한다.

- ②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하고, 30일 경과 시 자동 삭제가 되도록 한다.
- ③ 영상정보는 기기조정실 내에서만 검색·열람·재생·삭제할 수 있다.
- ④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책임자와 정보관리자로 제한한다.
- ⑤ 책임자와 정보관리자가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합법적인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제공, 열람, 파기 등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명칭
  3. 열람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열람 또는 제공의 근거
  5. 열람 또는 제공의 형태

### 제 3 장 영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정보수집의 제한) CCTV로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설치목적을 벗어나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보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없으며,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에는 열람 및 제공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때로서, 특정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연구원 기관장이 승인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영상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책임자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CCTV는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운영관리 방침 수립을 통한 관리적 보호조치 및 접근통제·암호·잠금장치 등의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책임자 또는 정보관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요청에 대하여 책임자는 신분을 확인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4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 또는 차단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인하여, 타인의 사회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비밀유지의무) ① 책임자 및 정보관리자는 영상정보,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CCTV 유지보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CCTV 시스템의 유지·보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방침은 201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침의 개정 및 공고)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